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2005년 7월 18일~19일

(국회, 현정기념관 2층 강당)

- 주관 : 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
- 주최 :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후원 : 한국장애인재단, 최순영의원실, 구논희의원실, 나경원의원실, 애이블뉴스, 워드뉴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2005년 7월 18일~1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 주관 : 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
- 주최 :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후원 : 한국장애인재단, 최순영의원실, 구는회의원실, 나경원의원실, 에이블뉴스, 워드뉴스

토론회 주요 일정

○ 첫째날(2005년 7월 18일(월))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 사회(겸 좌장) :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시간	구분	주제	발표(발언)자
11:00 ~ 11:15	대회사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	
11:15 ~ 11:30	국회의원 인사말	최순영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11:30 ~ 11:45	국회의원 인사말	구논희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11:45 ~ 12:00	연대단체 인사말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12:00 ~ 12:30	주제발표 - ①	고등교육 분야	차성안 (서울대장애인권연대사업팀, 제35기 사법연수생)
12:30 ~ 13:30		점심식사	
13:30 ~ 14:00	주제발표 - ②	직업교육 분야	황승욱 (경주 경희학교, 직업교사)
14:00 ~ 14:30	주제발표 - ③	평생교육 분야	김기룡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14:30 ~ 14:50		중간 휴식	
14:50 ~ 15:20	지정토론 - ①	고등교육 분야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육연구사)
15:20 ~ 15:50	지정토론 - ②	직업교육 분야	이상훈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5:50 ~ 16:20	지정토론 - ③	평생교육 분야	정인숙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16:20 ~ 16:30		중간 휴식	
16:30 ~ 17:30		질의 및 응답 (종합토론)	

○ 둘째날(2005년 7월 19일(화))

- 장애 영 ·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분야, 종합 토론

- 사회 : 김기룡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시간	구분	주제	발표자
10:00 ~ 10:15		인사말	박경석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10:15 ~ 10:30		국회의원 인사말	나경원 (국회 wecan, 한나라당)
10:40 ~ 11:10	주제발표 - ④	영 · 유아교육 분야	김치훈 (영어린이집, 교사, 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
11:10 ~ 11:40	지정토론	영 · 유아교육 분야	김성애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11:40 ~ 12:10		질의 및 응답	
12:10 ~ 13:00		점심시간	
13:00 ~ 13:30	주제발표 - ⑤	초 · 중등교육 분야	김형중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학부모,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
13:30 ~ 14:00	지정토론	초 · 중등교육 분야	김형일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14:00 ~ 14:30		질의 및 응답	
14:30 ~ 14:50		중간 휴식	
14:50 ~ 15:20	종합발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도경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15:20 ~ 15:40	지정토론 - ①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15:40 ~ 16:00	지정토론 - ②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최순영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16:00 ~ 16:10		중간 휴식	
16:10 ~ 16:30	지정토론 - ③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이유훈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
16:30 ~ 18:00		질의 및 응답 (종합토론)	

자료집 순서

- 주제발표 - ① (고등교육 분야)
차성안 /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대학 등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 - 5
- 지정토론 - ① (고등교육 분야)
김주영 /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토론자료" ----- 53
- 주제발표 - ② (직업교육 분야)
황승욱 / "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 ----- 91
- 지정토론 - ② (직업교육 분야)
이상훈 / "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에 대한 토론" ----- 104
- 주제발표 - ③ (평생교육 분야)
김기룡 /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안" ----- 113
- 지정토론 - ③ (평생교육 분야)
정인숙 /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방안 - 평생교육(일반)을 중심으로" ----- 136
- 주제발표 - ④ (영 · 유아교육 분야)
김치훈 / "장애영유아교육의 현실과 문제해결의 대안" ----- 141
- 지정토론 - ④ (영 · 유아교육 분야)
김성애 / "장애영유아교육의 현실과 문제해결의 대안에 대한 토론" ----- 165
- 주제발표 - ⑤ (초 · 중등교육 분야)
김형중 /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 171
- 지정토론 - ⑤ (초 · 중등교육 분야)
김형일 /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 191
- 종합발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도경만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 195
- 종합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 ①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박지연 / "특수교육진흥법 개선과제 지정토론 - 1" ----- 218
- 종합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 ②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최순영 / "정책의 틀을 다시 짜고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 223
- 종합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 ③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이유훈 /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 229
- 부록 :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 236

주제발표 - 1

(고등교육 분야)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대학 등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

차성안

(제35기 사법연수생)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대학등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

차성안

I. 서론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의 하나이며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일반전형 외의 여러 특별전형 대학입학 제도 중의 하나이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정원 외로서 정원 내에서 경쟁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또한 특별전형 정원의 상한이 법령상 제한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처음 실시된 1995년으로부터 벌써 10년의 기간이 흘렀다. 2004년 현재 전문대학 24개교, 대학교 49개교 총 73개의 대학¹⁾이 현재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장애인의 대학입학의 문이 넓혀져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입학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제대로 된 학업지원서비스의 부재, 잦은 휴학과 학사경고, 낮은 학업성취율, 학교생활에서의 일상적인 인권침해, 낮아지는 졸업률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무책임하게 입학의 가능성만²⁾을 열어두고 장애학생의 입학 후의 학습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투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한지 8년만인 2003년 말에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평가를 처음 실시하였다³⁾. 이 평가에서 나사렛대학교와 대구대학 2개교가 「최우수 평가」, 한림대 등 14개 대학이 「우수」 평가, 31개교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평가받은 전체 대학의 75%인 139개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대학의 장애인 학습권 보장 정도가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특히 국·공립 46개 대학 중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단 1개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국가가 심각하게 장애인 교육권을

1)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제도와 관련하여 어디에도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할지 여부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법규범 상황을 살피면서 더 자세히 다룬다.

3)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는 단순히 특별전형 제도 실시 이후로 처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설립 후 "처음 실시"하였다는 것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 <http://www.moe.go.kr>)

...2003년에 실시한 4년제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는 우리나라 대학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시설·설비지원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평가 함으로써...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뒤늦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2004년 8월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및 교수,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9년까지 590억원(평균을 내면 매년 100억여원 정도)을 투입하는 등의 '대학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늦어도 한참 늦게 나온 대책이 거니와 매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국의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의 교육인적자원부의 태도는 특수교육진흥법상 고등교육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지주씨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5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얻어낸 서울지방법원 2001. 12. 6. 선고 2001나25719[장애인 교육권] 판결에서도 특수교육진흥법은 전혀 그 근거가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입학계약상 배려의무라는 일반 민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숭실대학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한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은 배제되어 왔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를 고등교육법상 특별전형의 하나로 보고 별도의 정원 외의 선발을 허용한 제도이다⁴⁾. 1995년 당시 맨 처음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면서 특수교육진흥법상 초·중·고를 중심으로 규정된 입학 후의 학습권 보장규정들은 전혀 존재지 않았다. 다만 입학절차에서만 시행령, 시행규칙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이 가능한 학교 범위에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을 포함시키는 개정만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대학 입학 후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초·중·고를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진흥법상 규정이 대학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우 혼란스럽게 남아 있게 되었다. 기존의 초중고 과정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절차만을 장애인의 대학교육제도에 집어넣은 것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벌려놓고 통로는 넓히지 않은 기형적인 법규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대학 등에서의 고등교육은 강의내용과 강의방식이 초·중·고에서의 고정된 학급 중심의 교육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초·중·고의 교육내용에 관한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을 가져다 쓰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대학 등에서의 고등교육을 제대로 된 권리로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일반교육체계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런 식의 체계로 나뉘어 별도 법률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추진 중인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서는 '고등교육'을 별도의 파트로 규정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학등'을 중심으로 1) 먼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실태를 살펴보 난 다음, 2) 현재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법규범상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핀다. 그리고 나서 3)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 그 후에 4) 그것을 어떻게 입법화할지 그 기본적인 방향과 핵심을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여기서 "대학 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종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진흥법상 전공과와 대학 등에서의 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문제된다. 현재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교육과정을 거칠게 말하면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제4호의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과 대학 등으로 이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둘 간의 관계설정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직업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발제에서 보다 자세히 다를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였다.

II.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실태와 문제점

국가의 장애대학생 교육보장의 부재로 인하여 수많은 장애대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당해온 것이 지금 까지의 현실이었다. 이하에서는 객관적 통계수치와 구체적인 장애학생들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장애학생의 대학 등에서의 고등교육 실태를 제시한다. 통계수치는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 기준의 연구성과까지 잘 정리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2년 논문⁵⁾을 인용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주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이 소장 중인 서울대, 대구대, 나사렛대, 우석대, 농아인대학생연합,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등에서 작성된 장애학생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해당 장애 학생의 동의를 일일이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름과 학교는 밝히지 않고 장애유형과 입학년도(확인된 경우)만을 공개하였다.

1. 장애학생의 대학등 입학 실태

(1) 수능시험

수능시험은 한국의 입시제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대학등의 입학 시에도 수능시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장애학생의 수능시험 응시 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뤄 질 필요가 있다.

2003년 11월 수능시험을 치르던 뇌성마비 장애인 허광훈씨가 높이가 맞지 않는 책상, 장애인 화장실 미비 등의 이유로 수능시험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다⁶⁾. 그 후 허광훈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싸운 결과 2004년에는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⁷⁾

현재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비장애인 수험생과는 달리 시험시간에 따른 불이익을 감안, 약시와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는 영역별로 20분씩, 전맹인의 경우는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그 외에 시각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점자 확대문제지, 음성평가 자료, 청각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듣기평가를 대신 한 대체지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대독실에서 보조요원이 대독과 답안작성을 담당해주고 있다.

수능시험의 경우 어느 정도 수험편의가 제공되고 있으나 그 실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20분, 1.5배의 시간 연장이 합리적인지, 장애의 종종의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간을 연장하는 것

이 타당한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1995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 2004년 현재 73개 대학이 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 수가 적고 장애영역도 제한되어 있으며, 신학교 등에 몰려 있어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⁸⁾.

대학원 제외

다만 대학원 입학에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위 제도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수를 보면 113명, 217명, 276명, 355명, 396명, 368명, 421명, 614명, 427명, 424명 등으로 괄목한 만한 증가세를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유형 제한실태

장애유형은 특별히 법령상 제한을 두고 않으나 많은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각, 청각, 지체 등의 감각장애인 외의 발달장애, 자폐, 정신지체 등의 장애인의 입학을 배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동성 정동장애로 인해 정신장애 2급 판결을 받은 장애인 이○○의 원서조차 접수하지 않는 연세대학교에 고려대학교에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장애인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린 바가 있다⁹⁾. 위 결정문에 의하면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대학 중 11개 대학만이 장애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응시 가능한 장애유형을 지체·시청각·뇌성마비 또는 그 중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특별전형은 감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정신지체, 발달, 자폐 등의 기타 장애유형의 장애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중증의 장애인 배제 실태

또한 감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학교의 지원이 없이는 혼자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의 부담이 늘어나는 중증장애인을 배제하는 학교도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대학교 모집요강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유형 분석-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0」에 의하면 많은 대학에서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일 것을 요구하거나, 본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면담후 입학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특별전형 제도를 통하여 정원 외로 학생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정원을 늘려 등록금 수입을 늘리면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특별전형이 정원외 특별전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전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증의 장애인 배제

그리고 장애정도 즉 장애등급을 제한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 장애인복

5) '윤점룡, 김주영,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32쪽~78쪽' 참조.

6) 「늦깎이 장애인수험생 수능시험 포기, 허광훈씨, 수능시험장 장애인차별 항의 위해 장애인지역공동체, '국가인권위 정식 제소' 방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06 12:02:38

7) 「수능시험 장애인편의 많이 달라졌다 장애인 545명, 개선된 시험장서 수능 도전 시험장 개선 이끈 허광훈씨도 수능 재도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1-17 12:07:597)

8)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 결과 발표

9) 2004. 2. 16.자 03진차27 결정[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지법상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중증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¹⁰⁾.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차별을 보상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반전형이 충분히 가능한 경증장애인들이 특별전형을 통하여 상향지원하는 현상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특별전형으로 삼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중증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3) 일반전형 및 장애인특별전형 외의 특별전형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외에도 장애학생은 현재 일반전형 및 그 외의 다양한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할 수도 있다.

모집요강상 차별

일반전형의 모집요강에 제3자의 도움이 없이도 학습이 가능한자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장애학생의 지원을 막는 차별적 조항들을 가진 대학교의 사례가 다수 보고 된 것이 있다(바로 앞의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자료)

일반전형이나 장애인 특별전형외의 다른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인이 응시하는 경우에 수험편의 제공 실태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아마도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하여 수험편의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전형 등에도 당연히 장애학생에게 수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념 자체가 생기기 힘들었던 듯 하다.

대학원 입학 차별사례-청각장애인 TEPS 점수 변환 거부

대학원의 경우 장애인 특별전형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입학절차로만 입학이 가능하다. 대학원의 입학 차별 관련된 별도의 연구는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 입학시 TEPS 성적 또는 제2외국어 시험을 요구하는 한 국립대학에서 청해 영역 점수가 제외된 청각장애인의 TEPS 성적 제출을 불허하고 대신 제2외국어 성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당해 학교는 TEPS의 경우 듣기시험이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독해, 문법, 어휘 등의 다른 영역에서의 점수들을 변환해서 제공하는 경우 다른 비장애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이나 삼성 입사 시험 등의 경우에는 TEPS나 TOEIC 등의 청해영역을 뺀 변환점수 제출을 청각장애인에게 허용하고 있다. 위 국립대학은 당해 청각장애인에게 새로이 제2외국어 하나를 새로 습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단체에서 TEPS의 청해영역을 대체할 시험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TEPS 변환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든지 하라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원 입학시 장애로 인한 자격제한, 수험편의 제공여부 등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4) 입학시 수험편의 제공 실태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시험에 장애유형별로 여러 가지 수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i) 시각장애인의 경우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본, 전맹 학생을 위한 점자시험지, 필요한 경우 구슬테스

트로의 변경, 시간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ii)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이나 속기사를 이용한 문자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구화에 능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면접위원들이 입술모양을 정확히 하여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구화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힘든 학생의 경우 노트북 등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iii) 지체장애인의 경우 시험장으로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필기속도가 느린 장애학생의 경우 시간이 연장될 필요도 있다. iv) 정신지체, 발달장애 학생 등의 경우에도 그에 맞는 수학편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공되는 수학편의의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보이지 않는다. 한 청각장애인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면접복 때 면접자 앞에 모니터를 놓고 대평을 보여준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말하는 것은 알아듣는데 별로 복편한 것 없었고, 제가 말할 때는 복편을 느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은 대평을 안해준다. (2002년도, 청각장애)...”

입학시에 필요한 수학편의를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복복하는 절차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시원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학편의를 기재하도록 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 그리고 수학편의의 제공여부에 대해 응시한 장애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갈릴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공식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대학당국간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입학 시험 평가시

① 인권침해적인 장애에 관한 질문

장애학생의 장애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캐묻는 것은 장애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평가시에 어떤 수학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장애에 관한 질문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에 관한 질문은 면접위원들에 의하여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애를 어떻게 해서 입게 되었는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혼자서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등을 온갖 유형의 장애관련 질문이 던져진다. 이러한 장애에 관한 무차별적인 질문은 면접위원들에게 장애인권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면접 자리에서 실제 수학능력이 아닌 장애에 관한 질문을 늘어놓는 것은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학교가 중증장애인을 자신을 불합격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많은 장애학생이 그런 우려에서 자신은 학교의 지원 없이도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다는 식의 방어적인 얘기를 일부러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비하, 차별보다는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있다. 학교에서 학생을 어떻게 해줄 건지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하고 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할거야, 못 듣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리가 받아주는데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아직 사고방식이 다르다... (00 대학에 2002년에 입학한 청각장애인)”

“...내가 빛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컴퓨터에 써서 말을 했는데 교수님 한 분이 “왜 말을 배우지 않았지?”라고 말씀하셨다. 어이가 없었다. 빛을 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

10) 200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서울대 입학관리본부(<http://admission.snu.ac.kr/>)

각한다. 일종의 선입견이 개입되었던 것 같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배려가 미흡했던 것 같다.
(00 대학에 2002년에 입학한 청각장애학생*)

“...면접을 볼 때 “장애인아니까, 시각장애인은 처음 들어오고, 학교에 들어와서 특별히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라.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다.” 면접에 참여하신 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2000년에 00 대학원에 입학한 시각장애 학생)

② 평가절차의 형식화 - 불합격에 대한 의문&학업능력 하향평준화

장애에 관한 질문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실제 장애학생의 수학능력에 대한 평가의 비중은 작아진다. 많은 학생들이 특별전형시의 평가가 자신이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수학능력보다는 장애를 이유로 자신을 불합격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실제 실력 평가 보다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태도를 많이 봤던 것 같다.”(2002년에 00대에 입학한 청각장애학생)

“..나의 경우에는 미대에서 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2년에 걸쳐 준비하고 포트폴리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자료도 모아놨는데 슬라이드로 찍은 사진만 보고 힘들여 가지고 간 작품들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망했다... 정시모집 시험에 응시한 친구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직접 보고 세세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2002년에 00대에 입학한 청각장애학생)

“...평가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그 비율이 많이 적지요. 비장애인학생 같은 것은 그게 주죠. 100%죠. 우리 같은 8:2정도 되죠. 8 정도가 학교적응문제죠. 저 같은 시각장애인이 처음이잖아요.(2004년도에 00 대학에 입학한 시각장애학생)”

또한 반대로 이러한 평가절차의 형식화는 장애학생의 수학능력을 엄격히 판단하지 않음으로서 장애학생의 수학능력에 맞는 대학선택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장애학생 개인의 입시준비에 대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고, 입학지원시에 자신의 수학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전형 평가절차의 형식화가 장애학생의 상향지원을 부추겨 대학입학후의 학업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학업능력의 하향평준화’라는 명칭으로 김주영¹¹⁾,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등의 연구 등에서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③ 불명확한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선발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 다만 특별전형이라는 형태에서 어느 정도 평가기준이 객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대학별 선발기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11) 김주영,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실태와 개선대책」

(6)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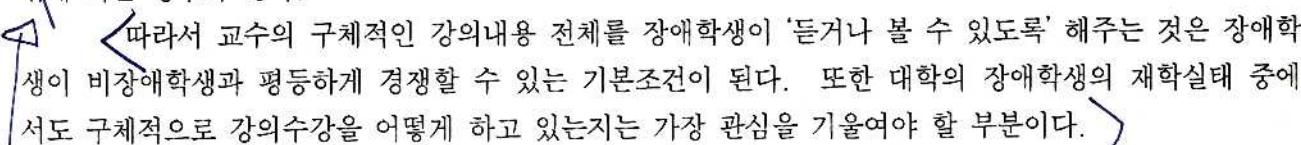
장애인의 입학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전형 절차 및 장애인 특별전형 외의 특별전형을 통한 입학시에 수학편의제공실태 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특별전형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할 장애학생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전형이라는 일종의 장애를 이유로 한 적극적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을 통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입학하고자 하는 장애학생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일반전형시의 수학편의제공 실태, 장애학생의 대학원 입학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대학의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실시대학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장애학생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가 제공해야 할 수학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장애에 관한 질문을 남발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입학시험 평가를 형식화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수학편의의 신청, 조사, 불복 절차도 공식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전형시 불명확한 선발기준은 특별전형이 장애학생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2. 수업에의 접근권 보장 실태

대학등에서의 강의의 중요성 - 초·중·고와의 비교

많은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대학의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초중등의 수업방식과는 차이가 커서 공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 초중등의 경우에는 수업을 듣는 교실이 거의 변경되지 않고, 담임도 정해져 있고, 교재도 정형적이고, 평가도 정형적으로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개별적인 수업의 중요성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교재가 정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레포트 작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참고문헌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강의를 진행하는 개별 교수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교수의 강의 하나 하나의 내용을 꼼꼼히 듣고 따라가야 하는 필요가 훨씬 더 커진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을 받을 시에 우수한 성적을 받던 학생들도 대학 등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수의 구체적인 강의내용 전체를 장애학생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장애학생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된다. 또한 대학의 장애학생의 재학실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강의수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1) 수강신청 등 수업선택

응답이 이뤄진 대학 중 청각장애학생들을 고려한 강좌를 개설한 곳은 2.4%, 청각장애로 인한 이수불 가능 강좌를 대신할 대체과목을 개설한 곳은 10.3%,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사이버(인터넷) 강의 개설한 곳은 15.0%에 불과하였다(국가인권위 68쪽). 특히 두 번째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곳은 문제가 심각하다. 대체과목이 없는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학점을 그냥 부여하거나 혹은 평균의 학점을 그냥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일부 대학의 경우 꼭 들어야 하는 영어 수업을 청각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학생의 경우 듣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수업을 면제시키기도 한다.

한국학교 흥복원
한국장애인 학습援助 연구소 스트리스 .

“...1학년 1학기때는 몇도 모르고 55동이나 28동등 접근 불가능 한곳에 수강신청을 했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것을 알고 1학년 2학기때부터는 건물의 접근가능성을 보고 나서 접근 가능한 건물만 수강신청을 하고, 어쩔수 없이 접근 불가능한곳에서 들어야 할 경우(전공 등) 지원센터에 강의실 변경을 요구한다”(휠체어 장애, 2004년)

“한자시험 같은 대체레포트 같은 것으로 평가해 달라 했는데 그냥 하지 말아라. 대학영어만 듣게 한다는지. 텁스 시험은 안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시각장애, 2004년)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수강신청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수강신청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

“...1학년 때에는 수강 신청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특히 수강편수가 제공되지 않았음) 매우 힘들었으나 2학기부터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강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현재는 거의 불편 사항이 없음. ... 첫학기는 누구한테 물어댈라고 했다. 시각장애 당시자나 시각장애 전문가가 아니라면 접근법을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없다. 전쟁 새내기의 경우 첫수강신청의 경우에는 같은 곳 선배 한 명이 함께 의논하면서 수강신청을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됨.”(2004년, 시각장애)

(2) 학내이동 및 강의실로의 접근

강의실까지 이동하여 강의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다. 그러나 지체장애학생이나 시각장애학생들의 강의실에의 접근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응답한 39개 대학 중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 중 거의 모든 건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응답이 43.6%에 불과하였고, 응답한 42개 대학 중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건물 간 점자유도블록이 대부분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대학은 1개 대학 뿐이며 반 이하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이 34개로 81%에 달하였다(국가인권위 2002년 56쪽). 독립적인 이동과 접근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경우 임시적으로 동료학생을 이용한 장애학생교육보조원¹²⁾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응답한 43개 대학중 동료학생을 이용한 교육보조원 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25.6%에 불과하였다(국가인권위 53쪽). 캠퍼스내 이동차량 지원도 43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만 이뤄지고 있었다(국가인권위 70쪽). 다만 이동 및 수업 편의를 위한 도움인력 지원이 이뤄지는 학교 비율이 42.1%, 접근을 고려한 강의실 변경제도가 있는 곳이 47.2% 정도로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다른 장애영역에 비하면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 편이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빈약하였다(국가인권위 70쪽)

시각장애

시각 장애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한 기본전제로 강의실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보행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건물간을 연결하는 점자블록이 거의 깔려 있지 않으면, 깔려 있는 경우에도 실제 시각장애인의 이동동선, 안정성, 실용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12) 장애학생 동료 도우미, 봉사장학생, 장애학생 도우미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동료학생을 이용한 장애학생교육보조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겠다.

“...봉사장학생이 데리고 다닌다. 강의실까지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혼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동선에 따라서 전자불록 몇 랜드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터닝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 우체통이 있으면 우체통은 학생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우체통을 케인으로 터치한 다음에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00대는 그렇게 거의 없다. 허허벌판이다. 전자불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정된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별로 없다.”(2004년,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동차량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그 운행범위나 운행시간 등에 있어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학등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저상버스 등으로 제공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 그런데 수업관련해서 항상 운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6시까지만 운행하는게 좀 난감하다. 나는 식후이 9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정규수업인데, 정규수업이 끝나고 운행을 하지 않아 항상 택시를 타고 기숙사까지 들어와야 해서 불편하다.”(2004년, 휠체어 장애)

강의실에 경사로가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강의실 변경 제도는 지체장애학생의 수업선택권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예 이런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강신청했던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 강의실을 제대로 변경해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접근 불가능한 강의실이거나 맨 뒷자리에만 접근 가능해서 강의실 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7 번이었는데(여태 모두 통틀어서...) 강의실 변경이 제대로 된 경우는 2 번밖에 없었다. ...그 수업을 듣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선의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보류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강의실변경제도가 제도화되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학교내 모든 건물 내의 강의실에 휠체어가 접근할수 있도록 강의실을 개보수해야한다고 생각한다.”(2004년, 휠체어 장애)

(3) 수업내용에 대한 접근권 보장 실태

① 시각 - 전자도서 형태의 강의교재 확보 등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먼저 앉을 좌석확보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다. 일단 좌석을 누군가 미리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고, 수업의 수강생이 밀리는 경우 자리를 미리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 우선석 제도가 필요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의실안에 장애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지정석을 마련해야 될 거고. 특히 00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지정석이 있기는 하는데, 스티커 하나 붙여는 거래서. 강의실을 봄마후에 세미나하려고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 스티커를 붙인 좌석이 막 돌아다닌다. 애들이 지정석에 대한 개념이 안 있어서 애들이 그냥 앉아버린다. 만약 시각장애인인 혼자 간다면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앉을 수도 있는데, 여학우 같은 경우도 불쾌할 수도 있는 거고”(2004년,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다시 그 안에서 저시력 장애, 전맹 등의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 저시력 장애는 그 잔존 시력의 정도,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또 다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시력 장애학생과 전맹 장애학생의 구분이 가능할 수는 있다.

저시력 장애학생의 경우 강의교재, 참고교재, 유인물 등과 관련하여 확대본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기 등의 장치가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2002년 당시 실시하던 43개 대학 중 17개 대학등에서 제공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수업 들을 때, 컴퓨터 공학과에서 스크린 위주의 수업일 수 밖에 없는데, 칠판이 파워포인트, OHP를 이용하는 수업이라서 참여하기 힘들다”(시각장애, 낳)

“...시험 볼 때 시험번위가 많은데 다른 비장애 학우들보다 시력이 좋지 않아(저시력) 교재를 다 보려면 눈이 쉽게 피곤하고 힘들다. 그렇다고 교수님이 따로 유인물이나 복사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어서 매번 힘든 경험을 해야 한다. (시각장애, 여)”

이것은 강의하는 교수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수기법에 대한 교육, 감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맹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강의교재, 참고교재, 유인물 등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읽을 수 있는 전자도서이나 또는 점자형태, 또는 녹음도서의 형태로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전자도서이다. 검색이 자유롭고, 속도조절이 용이하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메모해가면서 자기 책을 만들어나가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강의노트를 제공받을 필요도 있다.

“첫날 수업에서 교수님은 프리젠테이션 수업으로 강의를 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디 책이 나도 구할 수 있나 싶어 장애인지원센터로 갔더니 OO 대학교 출판사의 책이 아니라 없다고 말하였습니다.”(시각장애인, 00대)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음성변환이 가능한 문서파일 편집 교재를 제공하는 대학은 10.2%에 불과하고 녹음교재를 제공하는 곳도 5.1%에 그쳤다(국가인권위 70쪽)

그러나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학교라도 문제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OO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업이 시작된 후로 꽤 지나야 제공되고, OO대학교출판부에서 출판한 책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도서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OO대의 경우 봉사장학생을 이용하여 책을 타이핑하여 전자도서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전공과목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고, 교양과목의 경우는 거의 교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교재가 없는 수업만을 골라 듣는 실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재의 원본 데이터 파일을 요청하여 제공받는 경우도 꽤 있으나, 대학교수 등 많은 저자이 파일이 무단으로 유포되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¹³⁾. 장애학생은 아는 점역사에게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를 지불하여 개인적으로 교재를 제작하기도 하고, 인근 복지관의 점역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각개각진 형태로 제작되는 전자도서는 그 질에 있어서 천차만별이고 현재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그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 현재 저작권법상으로

는 책등을 직접 타이핑하여 전자도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나 저작권자에게 점역을 위하여 원본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또는 매도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② 청각 - 문자통역 또는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등

청각장애인도 그 유형이 다양하다. 크게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양자를 병행하는 청각장애인 들이 있다.

청각장애인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수업을 “눈으로 듣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음성으로 전달되는 교수의 강의내용을 들을 수 없으므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¹⁴⁾을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각 장애인의 경우 자체장애인에 비하여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문수화통역사가 강의를 지원하는 곳은 7.5%에 불과하였고, 비전문 수화통역사의 경우 13.5% 정도가 지원되었다(국가인권위 69쪽)

“02년도에 내가 처음 입학했을 때는 대필도 우려조차도 없었고, 아무도 그러한 것에 고민하지 않았다. 그 때의 수업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했는데, 교수는 봉어처럼 무슨 말인가를 뻐끔뻔거리기만 하고, OHP 펼침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짚적이 가지 않는다. 책상이 떨어져 있어서 친구의 펑기등 봄 수도 없고.... 교재라고 소개된 책만 들여다보면서 수업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때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얼마나 뻐꼈었던지, 그리고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시험을 보는 날 시험지를 받아들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결국 백지를 내고 나았고 치악의 학점을 받았던 그 답답했던 때가 생각난다. 아마도 귀마개를 끊고 수업을 들어본다면 청각장애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청각장애, 2002년)

“... 네. 1학기 때 생각보다 성적이 낮았다. 대필도 거의 안 되었고 수업내용을 거의 알아듣기도 힘들었다. 교수들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2002년, 청각장애)

이와 관련하여 00대등은 봉사장학생이 이동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강의실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00대는 입학후에 장애학생이 봉사장학생과 일정기간 동안 학교 전역을 같이 돌아다니며 지리를 익힐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장학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이런식의 이동보조를 위한 봉사장학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수화통역과 전문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속기사에 의한 문자통역 양자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대구대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청각장애인 수업을 듣는 경우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 외에 대구미래대학, 한일장신대학교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수화통역사를 고용하여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다(타대학 청각장애인 학우들의 지원체계사례(2002년도),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연세대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시범적으로 예산을 받아 속기사 1명을 2005년 1학기 동안 채용하여 실험적으로 속

14) 자막서비스, 대필서비스 등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문자통역은 수화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수화를 모르는 구화 청각 장애인의 경우 문자통역은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수화통역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자통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최민석, 「시각장애인 배려하는 저작권 제도를 소망하며」, 「저작권 문화 2004년 12월-제12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기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대나 연세대, 나사렛 대학교 등의 경우 재학생 중 타수가 빠른 학생을 이용한 노트북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대의 경우 노트북 대필을 하는 봉사장 학생에게 보수가 주어지지는 않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한달에 13만원을 지급하는 봉사장학생 제도 형태로 대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아예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 서비스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곳도 존재하는 듯 하고, 학교별로 그 보장수준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 같은 국립대학일 지라도 큰 차이가 있는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재활복지대학에서만 전문속기사를 이용한 문자통역과 수화통역사를 이용한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통역, 수화통역, 또는 양자를 병행하는 것 등등의 여러 조치들 중 어떤 방식을 필요로 하는지는 해당 장애학생의 청각장애의 유형 및 정도, 의사소통방식, 구화 또는 수화 사용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특정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OO대의 경우에는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이 많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이 수화를 알지 못하여 전문속기사를 활용한 문자통역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 대학교에서 2004년 9월 17일 재활복지대학으로부터 속기사를 초빙하여 봉사장학생의 노트북을 이용한 문자통역과 전문속기사에 의한 문자통역 양자의 질을 비교하는 시연이 있었다. 봉사장학생이 전체 내용 일부를 요약식으로 쳐내는 것에 비하여 전문속기사는 거의 100%에 가까운 문자통역을 보여주었다.

대필 봉사장학생의 문자통역 내용 일부	전문속기사에 의한 문자통역 내용 일부
정신분석이론 정신부석이론 에릭슨의이론을 에릭슨의 경우는 성적인 에너지 본능적인 욕구가 신체 어느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게 프로이트와 대조되는 것 프로이트는 인간 발달관계를 5단계로 했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는 노뇨期 까지해서 8단계로 생각 성인기라든지 중년기라든지 죽을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과정이라고 제시. 에릭슨의 이론에서는 대비되는 인성특성. 각단계마다 해결해야하는 위기가 있닥 고 했다 다르게 발달될수 있다고 한겨죠 위기가 기회다 라고 했어요 해결한 결과로 자기가 새롭게 다른 더 바람직한 성격특성을 하나의 모습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겨죠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주소가 학교 수업게시판 이/씨죠 여러분들 수강신청한 과목을찾아서 들어가면 저절로 보이게 되어 있다	정신분석이론 2번째로 에릭슨의 이론을 보겠습니다. 에릭슨의 경우는 성적인 에너지, 본능적인 욕구가 신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달이 되어 간다고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 성격 발달에 중요하다고 본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과 다른 점이죠. 또 하나 프로이트 이론과 구별을 해야 할 부분은 프로이트는 인간 발달이 5단계로 이뤄진다고 하면서 청년기까지만 발달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슨을 노련기까지 해서 8단계를 제시했어요. 인간 발달이 청년기까지만 이뤄지고 그 다음은 쭉 이어지는게 아니라 노년기까지 죽을 때 까지 계속 이뤄지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에릭슨 이론에서는 인간 발달 각 단계마다 대비되는 인성 특성이 각 단계마다 관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되는 위기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단계 관련되는 인성 특성이 다르게 발달될 수 있다고 본거죠. 여기에서 위기라고 한 것은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해결한 결과로 자기가 새롭게 더 다른 바람직한 성격 특성을 얻어서 자기의 하나의 모습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거죠.
	슬라이드의 웹에 올려줄 수 있나요? - 예. 지난주에도 올려놨거든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 수업 게시판.
	수강신청한 과목 목록 찾아서 들어가면 저절로 보이게 돼 있을 거예요.

대학의 강의에서 교수 개인의 강의내용에 대한 숙지도가 평가에 있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현재 타수가 빠른 학생들에 의한 노트북을 이용한 문자통역은 일단 일정한 타수(통상 600타) 이상을 가진 봉사장학생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모집과정에서 타수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각장애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봉사장학생과 청각장애학생간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올해 5월에는 전문속기사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서울대에서 농아인대학생연합, 농아인협회, 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③ 지체 - 필기지원, 휠체어용 좌석확보, 강의실내 이동 등

강의실에 접근한 후에도 휠체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높이가 맞는 전용체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휠체어용 좌석을 제공하는 학교는 16.7%의 불과하였다(국가인권위 58쪽).

그리고 필기속도가 느린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필기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기노트 제공 등이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학생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④ 교수의 지원, 강의방식

교수의 지원이나 강의방식과 관련하여 응답한 130여명의 장애학생들 가운데 교수의 강의방식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7.7%(75명)에 달하였고,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과제를 내는 것'(18.5%),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조별 모임을 구성하는 것(17.7%) 등이 그 뒤를 따랐다(국가인권위 68쪽)

"...교수가 자료를 잘 안줘요. 교수님한테 강의마다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교수님은 강의록이 없는 분도 계시고, 있는데 주기 날갈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1년동안 들은 수업에서 그렇게 따로 강의록 주신 교수님이 한 분 있었는데, 강의록이라고 할만 한건 못되고, 학생들 페이퍼 나눠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에다가 키워드나든가 핵심어 몇마디 써논게 전부였어요. 그런 건 시지적인 도움이 안되죠. 다 주는 페이퍼에다가 약간 몇마디 덧붙인 거니까요."(2002년, 청각장애)

⑤ 평가

평가에 있어 어려움에 대하여 응답한 130명의 학생들은 '시험 평가 기준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32.3%), 시험답안지 작성이 어렵다는 점(31.5%), 시험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24.6%) 등의 답변을 하였고, 과제수행에서 있어서도 시각정보 습득의 제한이나 자료작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과제제출기한에 쫓기는 점(36.4%), 사전의 과제제출안내가 없는 점(20.8%), 장애로 인하여 대체가 필요함에도 과제물을 대체해주는 않는 점(19.2%) 등의 답변을 하였다(국가인권위 68쪽)

"...막연하게 다른 학생은 5백 페이지 짜리 자료를 읽고 레포트를 읽고 써야 하는데, 시각장애인 150페이지를 읽고 써야. 이건 불합리. 대부분의 교수님은 사전지식이 없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의해서 대체평가기준을 제시해 줄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2004년, 시각장애)

"2000년, 내가 2학년일 때 일이다. 학전 평전을 조금 옮겨보려고 '영어작문'이라는 교양을 듣기로 했

다. 내 예상대로 수업이 찻 평이했다. "I am a boy, What do you do" 등과 같은 중2영어 수준인 아주 단순한 회화로 수업을 이끌어나가곤 했다. 시현이 다가오자 난 교수님께 시현을 어떻게 쳤으면 좋겠냐고 여쭈어보았다. 대답은 의외였다. 시현을 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때도 난 몇 번이나 시현을 치겠다고 말했을 드렸지만 교수님께서 학점은 알아서 줄 테니 걱정말라고 하셨다. 드디어 성적이 공시되었던 결과는 D.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어처구니없어 하셨다. 중학교때부터 난 영어를 가장 좋아했었고, 그런 맘큼 실력도 웬만했다..."(지체장애 1급, 00대)

00대학의 경우 2005년 6월 당해 학교 지원센터에서 속기사도입을 위하여 시험적으로 부른 재활복지대학 소속 속기사가 문자통역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교수의 문자통역 불허로 인하여 그냥 다시 돌아간 일이 있었다. 앞으로 장애학생교육보조원이 교육지원을 행하는 경우 교육보조원과 교수간의 갈등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6) 절차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수학편의등에 대한 사전조사절차 등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문제된다. 그러나 이런 항목으로 별도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00대학교장애인 학생교육권학보를위한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매 학기 초 장애인 학생의 개별 교수학습 요구 조사서를 작성하고 개별학생의 특성화 교수학습 지원 요구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요청서를 장애인 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총장명의로 봉송하라!"

(7) 정신지체, 자폐, 발달 등의 장애인

위와 같은 유형의 장애학생들은 대학의 일반적인 수업을 수강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수업내용을 유지하면서 수업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수학편의가 필요한 감각장애학생과는 달리 수업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수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학 내에 일종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 등에 입학한 위와 같은 유형의 장애 학생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3. 통학, 기숙사, 장학금 또는 수당제도

(1) 통학

휠체어 지체 장애학생이나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 경우 부모등이 데려다 주거나 택시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통학비용을 보조해 주는 등의 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2) 기숙사

15) 이와 관련해 아래의 기사 참조. 한겨례신문 2005.4.9. (화) 어느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생 활, 김시내(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이 기사에는 김시내씨는 대학에 입학한 정신지체장애인에서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주일에 15시간정도의 직업교육, 생활지도 등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학생이나 그 보조인에게 기숙사를 우선배정하고 있는지, 기숙사에 장애학생 개인에 맞게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태조사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① 기숙사 정보 제공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경우 각각 시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숙사 정보를 다른 대체적인 방식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올려놓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직접 와서 그를 써서 전해주든지, 경우에 따라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학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기숙사 별로 불편한 것은 없는데, 방송 같은 건 나오면 그런 것 못 듣고. 예를 들어 내일은 소독하겠다 그런 거. 소독하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못 들어서 혼자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숨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 그런데 처음에 기숙사 들어갈 때 다 설명해 해줘요. 기숙사도 OT 같은 거 해요. 식당 어디고 세탁소 어디고 우편물 받고 그 다음에 컴퓨터, 웹 설정하고 이런 것 다 알려줘요. 그런데 저는 이 여인 갔죠. 못 갔죠. 있는 줄 몰랐어요. 기숙사에서 기숙사 들어오기 전에 연락이 끊어요. 있는데 저는 안 들으니까 못 갔죠. 메일이나 우편물. 문자도 좋긴 한데 기숙사 사무실 전화로는 문자를 못 보내니까. 수워나 자치위원회들은 제가 청각장애가 있는 줄 몰라요. 학교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연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얘기를 안 했어요.”

② 활동보조인 제도

기숙사 등에서 유급활동보조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드문 듯 하다. OO 대학교의 룸메이트를 동의없이 강제로 중증장애인 보조인으로 붙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저는 자체 1급 장애인입니다. 두다리를 못 쓰고, 두 팔과 손 또한 사용이 힘든 상황이지요. 한마디로 저는 혼자서는 샤워나 머리감는 등의 일은 끝이 묵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변처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직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룸메이트와도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는 자주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장실을 한번 갈 때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으며 그마저 불가능하면 기숙사에서 아는 사람이 최소 2명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게 언제가 됐건 간에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깎는 일 등도 일주일에 한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학장실 한번 가는 것, 한번 씻는 것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찾아하는 이것이 인간답습니까? 만약 기숙사에 상근 도우미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장애인대학생 교육지원실태-대학내 활동보조제도 모색을 위한 대학생 간담회가 대구대학교 장애인 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의 주체로 2005. 6. 4. 개최되기도 하였다.

(3) 장학금 내지 수당

장애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응답한 129명의

학생들 중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8.8%에 해당하였다. 아직도 반수 이상(52.1%)의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학에 따라 성적기준을 설정하는 곳도 있다. OO대의 경우 2.0, OO대의 경우 3.5 등 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 예를 들어 통학비용, 차량운행비용, 전동휠체어 수리등 유지비용, 시각장애인의 전자도서등 제작비용 등을 별도의 수당형태로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는 듯하다. 다만 OO 대학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월 12만원, 월 9만원,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오히려 학교가 지원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평계거리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 장학금의 경우 애초 생긴 이유가 학교가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생긴 제도로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복지장학금이 학교 측에서 전반적 지원의 불가능함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국내외 장애인대학생 교육지원실태-대학내 활동보조제도 모색을 위한 대학생 간담회』 자료집, OO대학교 장애인 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2005. 6. 4, 4쪽)

4. 학교생활시설

(1) 도서관

대학의 경우 강의 외에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도서관의 책을 검색하여 빌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에서 130명의 장애학생 중 33.1%의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반수 이상인 52.1%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해질 수록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국가인권위 62쪽)

(2) 식당

식사와 관련하여 많은 대학교의 구내식당은 식판을 자기가 들고가서 음식을 받아와야 하는 배식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같이 식사할 주변사람을 항상 찾아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되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내에서의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식당이용과 관련하여 1급의 중증장애인의 20%, 시각장애인의 10.4%가 식당 이용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가인권위 62쪽)

(3) 전산실

전산실의 이용과 관련하여 128명의 응답자 가운데 32.9%의 학생들이 전산실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64.8%라는 높은 비중의 시각장애인들이 그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국가인권위 63쪽). 아마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설비되어 있지 않아서일 것이다.

(4) 학생회관

20.4%의 학생들이 학생회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국가인권위 64쪽)

(5) 청각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및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문제

①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

청각 장애학생이 학교의 행정실, 보건소, 상담소 등을 이용할 때마다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겨난다. 이와 관련하여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람이나 문자통역이 가능한 노트북등의 설비를 상시적으로 몇군데에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실태조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직원 중 수화통역 가능자가 있는 곳이 17.5% 정도였다(국가인권위 69쪽)

“처번에는 배가 아파서 정맥 땅을 구르고 했지만 간히 보건소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 가도 저의 아픈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바보처럼 있다가 아무런 처방도 없이 나와야 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만약 수화통역사가 학교에 상근배치되었다면 제가 연락이라도 해서 통역이라도 부탁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②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각종 게시판의 유인물, 학교 홈페이지등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행정실, 보건소, 상담소 등등의 학교기관의 게시판에 붙는 각종 안내, 공고문들에 대한 정보접근이 문제가 된다. 점자로 제공하든, 아니면 전화등을 통하여 설명하든, 아니면 홈페이지등에 공지사항란에 모아서 전자파일로 올려주든 등의 정보접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은 중요한 학업 관련 정보가 학교본부 홈페이지, 단대 홈페이지, 학사행정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등등에 뜬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접근성 규칙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은 학교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는 보이지 않으나 다른 대

부분의 홈페이지처럼 웹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에 관한 별도의 실태조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5. 진로 지원 실태

조사한 참여한 응답자 중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12.6%에 그쳤다(국가인권위 77쪽).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가 장애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장벽들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범대, 교대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규정 제5조의 적용으로 장애인을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관행에 대하여 사범대나 교대 쪽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는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는 경우 우라 할지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직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직무수행은 보조적 공학기거나 보조인을 통한 수업보조를 받아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6.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한 절차 기구

(1)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의 설치, 운영실태

응답한 43개 대학 중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한 곳은 2개 사립대학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장애학생 담당자를 두고 있는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개 대학에 지나지 않았다(국가인권위 52쪽). 그러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생긴 곳의 경우에도 그 운영상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공식적인 신청절차도 존재하지 않거나 신청 후에 처리할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지원센터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학교 또는 국가(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동료학생을 이용한 장애학생교육보조원 제도 실시여부

응답한 43개 대학 중 동료학생을 이용한 교육보조원 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25.6%에 불과하였다(국가인권위 53쪽). 그러나 제도 자체가 있는지 외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을 뽑을 때 교육보조 업무별로 적당한 자격기준이 지켜지는지(예를 들어 문자통역), 사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감독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도 문제가 된다. 적어도 문자통역과 관련하여 많은 대학에서 동시에 문자통역이 가능한 일정한 타수의 학생들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3) 지원서비스 제공절차, 신청 및 불복절차

이에 대한 통계조사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일단 신청은 가능하나 그 신청한 조치에 대한 처리기한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되었을 경우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현재로서는 없다.

(4) 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정책, 예산 수립 등에의 참여실태

학교 측의 일방적 예산집행으로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OO대학의 경우에는 1~2억원을 들어 전자감응장치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이 나무앞으로 지나가면 나무의 종류, 이름 등에 자동 안내가 되는 수목원을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장애학생 당사자들은 그 돈으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자도서 제작비용으로 써 줄 것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한다. 또한 OO 대학의 경우에는 값비싼 책상을 구입하여 장애학생 우선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도서관에 비치했으나 그 높낮이가 잘 맞지 않고 의자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책상의 배치 위치가 도서관 문 바로 앞의 시끄러운 장소여서 장애학생이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되기도 하였다.

7. 소결

(1) 학교별 편차의 문제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별로 그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그 차이가 훨씬 더 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립재활복지전문대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재활복지대학에서는 전문적인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에 의한 수화통역과

문자통역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그 외의 국립대학에서는 전혀 위와 같은 전문인력에 의한 통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국립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평등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의 사례였던 박지주 판례를 국립대학에 적용시키는 경우 같은 국립대학간의 그와 같은 차이가 용납되기는 힘들 것이다. 어떤 특정한 대학에 시범적으로 장애학생 지원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확대하는 과정이라는 식의 변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활복지대학이 설립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흐른 만큼 이미 그와 같은 시험적 실시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장애유형별 편차의 문제

대학들의 초기 지원이 편의시설 등의 물리적 시설에 집중되면서 지체장애인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문자통역, 수화통역, 점역 등의 인력을 통한 서비스를 주로 필요로 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소홀히 되어 왔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전자도서 등의 형태의 교재 확보, 청각장애인의 전문 수화통역사나 전문속기사에 의한 문자통역 확보 등의 문제는 매우 절박한 문제임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3) 공식적인 기구, 절차의 부재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생활지원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아예 장애학생지원센터나 전담인력이 없는 곳이 많고, 있는 곳의 경우에도 학업지원 서비스의 조사, 신청, 거부시 불복수단 등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쟁해결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그 해결여부는 장애학생의 개인적인 적극성 여부, 장애학생 단체의 존재 및 그 적극성의 정도에 달려 있는 실정이다.

(4) 장애학생 지원의 비전문성 - 동료학생을 이용한 장애학생교육보조원 제도의 딜레마

먼저 소위 “장애학생 도우미”로부터 대필서비스를 받고 한 청각장애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2. 대필 도우미의 한계

그러한 상황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제기로 대필 도우미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제 수업시간에 종종 청각장애 학생과 그의 옆에 붙어서 노트북으로 타자를 열심히 치는 대필도우미를 볼 수 있다.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단문 400타 정도의 타자 실력으로 엄청난 오타를 내면서 선생님의 말을 문자화 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내용을 누락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수업 내용 자체를 이해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이다. 이것은 평범한 학생인 대필도우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을 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 그는 역시 그 저 학생이기 때문이지 문자통역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닌 것이다. 결국 시험을 볼 때 모든 범위를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처음 보는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청각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동등하게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대필도우미를 선발할 때 타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시간이 맞는 학생들만 우선 배치했다. 덕분에 ‘운 나쁘게’ 타자가 느린 대필도우미를 만나게 되면 그 수업은 비장애인 학생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은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처음 입학하고 아무 것도 없었던 암울했던 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 상

황은 더 견디기 어렵다. 전출을 해도 처음 보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이러한 경우는 정말 아니다. 우리도 비청각장애인들과 똑같이 수업을 듣고 싶고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하게 경쟁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¹⁶⁾

현재 소위 “장애학생 도우미”라는 형태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이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방치되어 있던 장애학생 교육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성과를 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존재는 동시에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재 등을 전자도서로 변환하는데 있어 전문점역사에 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점역을 하지 못하고 비전문가인 봉사장학생 등의 어설픈 형태의 타이핑에 의존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강의에 대한 문자통역이 통역이 아닌 요약의 수준으로 전락하여 강의의 내용을 온전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위 “장애학생 도우미”등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있다. 학점이나 소액의 봉사장학금 등으로 이들의 책임성을 담보해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불성실한 소위 “장애학생 도우미”가 있는 경우 장애학생은 그로 인한 갈등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중증지체 장애인의 생리적 현상 해결, 일상생활 지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 등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있다. 해당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신변처리를 ‘자원봉사’하는 ‘무급 도우미’에게 부탁해야 하는 과정에서 굴욕을 느끼기 쉽고, 또한 그와의 인간관계에서 대등한 관계가 아닌 부탁하는 종속적 관계에 서게 된다. 근자에 룸메이트를 장애학생의 보조인으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OO 대학교에서 룸메이트에 의한 장애학생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소위 “장애학생 도우미”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문 수화통역사, 전문 속기사, 유급 활동보조인 고용 등의 요구에 대하여 예산부족이라는 이유와 함께 동료학생을 이용한 교육보조원 제도 즉 소위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의 하향평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수업의 주교재와 참고교재, 유인물 등이 전자도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은 요약, 축약, 건너뛰기 강의가 아닌 온전한 강의 전체 내용이 문자통역이나 수화통역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해당 장애학생의 비장애인과의 경쟁을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통역, 수화통역, 전자도서 등으로의 점역 등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쓰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보조와 관련하여 기숙사 등이 일정한 수의 유급활동보조인을 배치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위 “장애학생 도우미”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5) 학업수준의 하향화 문제

학업수준의 하향화 문제의 원인으로 김주영은 장애인특별전형제도 자체와 대학의 학업지원의 부재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별도의 정원을 인정받아 비장애인과 경쟁할 부담을 덜어주어 해당 장애학생이 보다 힘들이지 않고 보다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상향지원 경향을 낳

16) 2005. 5. 18. 「서울대학교내 청각장애인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워크샵 - 속기사 도입에 대하여」 자료집, 8~9쪽 |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과정에서 장애에 관한 질문등에 치중하여 실제 장애학생의 수학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고 있는 대학의 행태도 이러한 문제점을 부추기고 있다.

동시에 대학의 장애학생 학업지원 제도가 매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동등한 조건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 수준의 하향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칫 문제를 장애학생 개인의 문제 또는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만의 문제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 청각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불만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일단 못 듣는 데서 오는 것 이해를 못 해주니까. 제가 못 듣는데 교수님이 “왜 못 듣는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일단 못 들으니까. 수업내용이 전 100% 다 알 아듣는게 아니니까 제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 못 보는게 아니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시험을 잘 못 보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의)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능력이 없다고. 특별전형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구요. 원래 재는 공부 못하는데 특별전형으로 들어와서 대학에 적응못한다는식으로. 그런식으로 얘기해요. 의사였들이. “다른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해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신체적 불편도 없으면서 안 한다고” 그건 더 억울해요...”

III.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규법

1. 관련 법규법 개요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기초로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현재의 법규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법규법은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리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통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썼다.

현재의 장애인고등교육에 관한 법규법상황은 '입구는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안의 통로는 비좁아 통과하기는 힘든 동굴'의 모습과 비슷하다.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를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대학입학 가능성은 넓혀 놓았지만 정작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비장애학생들과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은 법규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지 않다.

첫째, 장애학생의 대학입학에 관하여는 특수교육진흥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율하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 후 학교 공부 및 학교생활 등에 관련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이 과연 대학입학후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혼란스런 의문만이 주로 존재한다. 셋째, 대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관련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나 대학의 경우 일률적으로 편의증진법 시행일인 1998. 4. 11. 이후에 설치된 건물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그 편의시설의 종류가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넷째, 위와 같은 성문법 형태의 법령 외에 하급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장애인에 대한 대학교의 배려의무 법리'를 통하여 일종의 불문법적인 법규법이 장애인의 대학에서의 고등교육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¹⁷⁾. 이것은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최초의 판례이자 유일한 판례인 '박지주 vs. 숭실대학교' 판결¹⁸⁾을 분석하여 구성해 볼 수 있다.

2. 특수교육진흥법이 대학 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통합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특수교육진흥법 어디에도 고등교육 내지 대학교육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학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사실상으로는 아무도 특수교육진흥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앞서 소개한 박지주 vs 숭실대학교 판례에서 조차 재판부는 배려의무의 근거로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연 특수교육진흥법은 대학교육에 적용되는 것일까, 아닐까.

우선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법문상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제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대학과정이상의 학교에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이하과정의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절차로서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대상자신청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도 특수교육진흥법의 포섭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장애대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그 대학에 의해 그 장애대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된다. 즉 장애인 대학생은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위를 갖는다.

즉 대학도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상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한 것이다. 위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학교를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와 "그 외의 각급학교"로 나누어 서로 다른 특수대상자 선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대학은 "그 외의 각급학교"에 들어간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는 통합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일반학교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일반학교를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에 따르면 대학은 특수교육기관이 아니고 일반학교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장애인 대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제2조 제6호 통합교육 정의 규정)"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은 통합교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특수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2조 제1항에서는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

17) 과연 판례법을 법규법을 발견하는 원천, 즉 법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린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법원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다는 실질적 의미에서 법규법의 범주로 포함시켜 논하기로 한다.

18) 서울지방법원 2001. 12. 6. 선고 2001나25719[장애인 교육권]

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이러저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특수교육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인 대학생을 교육하는 것도 특수교육의 개념에 포함된다.

"장애인대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대학등은 중학교 외의 각급학교이므로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을 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장애인대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것인데,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인 대학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궁여지책 - 임시적으로나마 특수교육진흥법을 대학등에 선택적으로 적용

특수교육진흥법상 편의시설 규정(제12조 제4항), 입학시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및 수학편의제공의무(제13조), 순회교육(제14조), 제15조(통합교육), 제16조(개별화교육), 제17조(보호자교육), 제24조(장학금지급등) 등의 규정이 대학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위 규정들은 적용대상을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많은 규정들은 대학등에서의 장애인 교육에 적용되기에 적절치 않다.

이것은 입법사적으로 과거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규정된 법의 틀 자체를 바꾸지 않고 시행령, 시행 규칙상에만 장애인의 대학교육의 입학절차를 규정한 것이 그 원인이다. 애초에 장애학생의 대학입학제도를 설계할 때 장애인의 대학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학이후의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상 규정에 손질을 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법률상으로는 장애인 대학생도 특수교육대상자이므로 해석을 통하여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조항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법리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예를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등] 제1항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대학은 중학교 외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의 총장도 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위 규정상 의무를 진다. 즉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대학교도 1) 입학전형시 수험편의, 2) 입학 후 수학시에 수학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3.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의 자율적 실시의 문제

현재의 장애인 대학생의 입학은 소위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특별전형제도라고 불리는 제도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인 의미에서 정확한 명칭은 그 근거가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정확히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다.

특수교육진흥법상에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으로서 대학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에 따른 특

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제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대학과정이상의 학교에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이하과정의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신청을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 자율적 실시는 위법?

그런데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 다만 오히려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 장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에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 대학등의 총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 특별전형은 모든 대학등에 특수교육진흥법상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가.

장애인 학생을 일반전형등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의무

그렇지는 않다. 다양한 특별전형의 실시여부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장애인 특별전형이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도 장애학생을 일반전형이나 그 외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 장애학생은 1)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하거나, 2) 모든 대학의 일반전형 및 장애인 특별전형외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양 쪽 모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제도를 이용하여 입학하는 것이므로 대학등은 입학전형시 "수험편의"나 입학후 "수학편의"를 장애학생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즉 대학등은 일반전형이나 장애인 특별전형 외의 특별전형절차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을 하는 장애학생 등을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4. 학교 수업 및 학교생활

(1) 구체적인 특수교육진흥법상 교육권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교육진흥법상 편의시설 규정(제12조 제4항), 입학시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및 수학편의제공의무(제13조), 순회교육(제14조), 제15조(통합교육), 제16조(개별화교육), 제17조(보호자교육), 제24조(장학금지급등) 등의 규정이 대학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규정이 대학에 적합하지 않다.

결국 대학등에서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전 까지 편의시설 규정(제12조 제4항), 수험편의 제공의무, 수학편의 제공의무(제13조), 장학금지급 등(제24조) 등의 적용을 임시방편적으로나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편의시설 규정은 2003. 12.

5. 부칙 제2항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명시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 규정 개정을 논의한 국회 속기록에도 대학등은 그 점토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편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물론 수험편의, 수학편의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장애인 특별전형이든, 일반전형이든, 그 외의 특별전형이든지 간에.]

(2) 박지주 판례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판례상 입학계약상 승실재단 쪽에 장애학생이 평등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배려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배려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편의증진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현재 승실대도 나름대로 설치중이라는 이유로 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봉사장학생 제도 도입, 턱의 제거, 강의실내 장애인 전용 책상 등의 비교적 손쉽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배려의무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박지주 판결의 의의는 현재 대학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법제가 미미된 상황에서 판례법리를 통하여 교육권을 보장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보장수준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제한되었다는 면에서 그 보장수준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250만원 밖에 인정하지 않은 것도 큰 한계이다.

현실적으로 장애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실제로 비슷한 법리를 가지고 싸우면 충분히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지체장애 이외의 영역에서 위의 배려의무 법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으나 실제 소송에 나서는 이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일단 대학의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위 판결을 시작, 청각 등의 다른 장애 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미비한 법률규정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5.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

(1) 편의증진법, 교통편의증진법의 적용여부

① 1998. 4. 11. 이전의 지어진 건물에의 원칙적 적용배제

대학등에 있어서 편의시설에 관한 편의증진법의 가장 큰 문제는 1998년 4월 이전의 건축된 건물에 대한 적용배제이다. 대부분의 건물이 1998년 이전에 지어진 상황에서 위 법을 통하여 대학등에 편의시설을 강제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증개축, 중요부분 용도변경의 경우 소급적용의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편의증진법 법 부칙 제2조,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특수학교만 소급적용시켜서 1998. 4. 11.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도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었다. 그러나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12제 제4항 및 2003. 12. 5.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특수학교가 아닌 각급 학교에게도 소급적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일반학교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문언상으로는 대학교는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소급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그 강제력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 규정을 입법화할 때 대학은 위 규정의 소요예산산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한동안 대학 편의시설 지원에는 예산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3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평가를 실시한 후인 2004년 8월에 발표한 장애인 대학생 지원대책안에서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2003년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각 대학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이번 평가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공립대학의 경우 공공시설로 보아 2000. 4. 10. 까지 기존시설까지 모두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시설의 경우 기존건물의 경우 증개축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학시설 건축은 일단의 대지 내에서 일어나는 증축으로 인허가가 되므로 법적으로는 기존시설까지도 이미 모두 의무편의시설의 정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기존의 편의시설 까지도 편의증진법에 의하여 바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하다. 국립대학을 공공시설 중 일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증개축은 통상 증개축 등을 하는 당해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학시설의 경우만 대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의 법리적 의문이 생긴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 입장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내도로 및 학교 운영 통학버스, 셔틀버스 등

교통약자와 이동편의증진법은 제9조에서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등의 학내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셔틀버스나 통학버스 또는 일반버스(일반버스가 들어오는 경우) 정류장 등이 여객시설에 해당하는지, 학교 운행 셔틀버스, 통합버스 등이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여객시설이나 교통수단에 포함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일반대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출입이 통제되는 대학구내 도로는 도로성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어 확실치가 않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종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 마.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
 - 바.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4.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결국 교통편의증진법에 의하여 대학등에 교통관련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기존의 편의증진법상 도로와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②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기준의 모호성

예를 들어 1998. 4. 11.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대학등의 5층이하의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 정답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학교 관련 규정을 보면 “계단 또는 승강기”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표현이 계단 “또는” 승강기로 되어 있어서 과연 대학등이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를 지는지가 애매모호하다. 위 규정의 “또는”을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단”을 설치하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과연 그 견해가 대학등의 시설을 건축하는 당사자, 그리고 그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그리고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갔을 경우 재판부에 의해 인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③ 대학등에서 필요한 장애인 교육보조시설이나 설비, 장치 규정

편의증진법 시행령은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를 건물의 종류, 용도를 불문하고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7) 장애인용 화장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욕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10) 점자블록,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12) 시각및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객실또는침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접수대또는작업대,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매표소·판매기또는음료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대학등의 교육시설이 특유하게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고정식 좌석을 설치하는 대학 등의 강의실에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좌석을 설치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을까.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볼수는 있으나, 시행령상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위 관람석또는열람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다. 결국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1998. 4. 11. 이후에 지어진 대학등의 건물의 강의실조차 장애인이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하도록 편의증진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외에도 대학등의 기숙사에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샤워실·탈의실을 강제할 수 있을가 역시 답은 아니다. 기숙사, 대학 모두 위 사항은 권장사항이다.

편의증진법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규정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휠체어, 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는 대학등의 학교는 아예 빠져 있고 도서관만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컴퓨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점자프린터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대학의 도서관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새긴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부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 외의 다양한 장애인 교육보조 장치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④ 시설의 이용, 관리 측면

예를 들어 잠금장치가 없는 장애인 화장실 문제, 오른손잡이용으로만 난간을 설치해 원손만 쓸 수 있

는 지체장애2급 학생이 제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 등등은 장애인 화장실에 안에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계단양쪽 또는 계단 가운데에 난간을 설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

(2) 시각,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규정은 거의 부존재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권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수화통역과 관련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에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정보의 접근) 제2항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등의 방영, 제3항에서는 주요행사의 경우 수화통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1조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방송 등의 경우만 해당되고, 교육기관에서의 수화통역, 폐쇄자막 등의 문자통역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EBS 수능방송이 위 규정에 따라 폐쇄자막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위 규정은 대학 등의 강의실에서의 수화통역, 문자통역에 시사점을 주기는 하나 이를 대학등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수화통역사등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규정도 참고할 만한 규정이기는 하다. 편의증진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이에 따라 규정된 편의증진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및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및 도서관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본조신설 2004.6.29]

위 규정을 보면 대학등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주인 대학의 장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당해 대학등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다양한 공중이용시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으로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이 대학등의 장에게 모든 수업에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5항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개정 2000.1.12, 2003.5.27>)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003.5.27>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5.27>

제1항은 범위의 제한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2항의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3조((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녹음 등이 가능한 시설)을 보면 학교의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로 제한되어 있다. 즉 ‘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상 통합교육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저작권 규정에 따라 해당 책을 직접 타이핑 하여 녹음도서나 전자도서로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나 타이핑에 매우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약 원본파일 내지 그 텍스트 파일을 제공받아 전자도서로 점역하는 경우 그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로 변환하기 위하여 원본 데이터 파일 내지 그 텍스트 파일을 요구하거나, 혹은 원본데이터 파일을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 파일로 변환한 파일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작권자들의 자료유출 및 무단배포의 우려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유출을 책임지고 방지할 수 있는 국가 기관에서 책임지고 원본데이터 파일을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 파일로 변환하고 반환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6. 소결

앞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법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고에서의 장애인교육에 관한 규정만이 주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등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입법화전까지는 다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수험편의, 수학편의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실제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편의증진법, 교통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등의 여러 관련규정들이 대학 등에서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적용이 불충분하거나 대학등의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법리상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결국 현재의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규범상황은 사실상 공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예를 미국의 경우 재활법 504조, ADA법 및 행정규칙(regulation)등의 상세한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법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¹⁹⁾ 장애인의 대학등에서의 고등교육을 커버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상 대학등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이 수학서비스 제공 거부 등의 교육권 침해행위를 당하였을 때 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상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등의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침해행위에 대한 절차적 보장수단을 입법을 통하여 마련한 필요도 크다.

IV.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구상

앞에서 살펴본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 그리고 현재의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규범상황을 기초로 하여 어떻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을 세울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다. 아래에서는 정책의 뼈대만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한다.

1. 핵심사항

(1) 기본원칙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입법시 1) 독립적인 학교생활(자립생활이념), 2)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 3) 장애유형별 다양성, 4) 장애학생 당사자의 참여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버클리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은 한국의 대학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둘째,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권 등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행 소위 ‘장애학생 도우미’ 특히 무급형태의 자원봉사 형태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동료학생을 이용한 교육보조원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일지라도 그에 대한 보수가 근로장학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장애학생은 그와 같은 유급 교육보조교육원에게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장애영역별 다양성, 그리고 같은 장애영역 내에서의 다양성 등 어느 한 장애영역에 치우쳐

¹⁹⁾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accommodation in academic programs were set forth in Section 504 of the federal Rehabilitation Act of 1973;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Title II; and their implementing regulations at 34 C.F.R. Part 104 and 28 C.F.R. Part 35 respectively.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편의시설에 집중되어 시각, 청각 장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필요는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에도 관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서 당사자는 보호자가 아닌 해당 장애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지적 판단 능력이 낮은 정신지체, 자폐, 발달장애 등의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등의 보호자가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고등교육 무상화의 문제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의무무상교육으로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무상교육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전공과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무상성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 장애학생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수학편의, 생활편의는 당연히 국가나 해당 대학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장애학생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을 장애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무상화할지, 또는 단계적으로 무상화할지, 일부 대학등과 같이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되 성적 기준을 설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할 듯 하다.

(3) 장애영역별 핵심 필요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설명해 나가는데 있어 그 중심을 어디에 둘지 장애영역별로 제시하여 보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적 정보에의 접근권', '시설에의 독립적 접근권' 등이 그 핵심 필요가 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권 또는 문자통역 형태의 의사소통권'이 핵심 필요가 될 것이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권, 시설접근권, 활동보조인 제도' 등이 그 핵심 필요가 될 것이다. 그 외에 필기 장애의 경우 '강의록 제공 내지 강의노트 제공 서비스, 시험시의 시간연장' 등의 핵심 필요가 될 수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현재 정신지체장애인의 과연 대학의 교과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입학이 허가되고, 입학 후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고등교육권 보장방안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의 다양한 장애영역에서 세부적인 핵심필요는 일단 생략한다.

(4) 대학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학원도 당연히 포함된다.

2. 장애인 특별전형제도의 개선(입학)

(1)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험편의 제공

입학전형시 장애인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일반전형 및 장애인 특별전형외의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수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앞서 법리적으로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등의 경우에도 일반전형 또는 그 외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규정과 같은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훈령 등 적절한 규범단계에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수험편의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① 시각은 점자시험지와 접근편의, ② 청각은 문자통역 또는 수화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③ 지체의 경우 시험장 접근 보장 및 장애인용 책상 마련, 필기장애등의 경우 시간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기타 장애영역을 위한 포괄적 규정

도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수험편의절차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수험편의제공신청권 및 불복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2) 일반전형 및 '장애인특별전형 외의 특별전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규정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이 일반전형이나 그 외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선정을 신청하는 절차, 수험편의 제공절차 등을 학칙 등에 규정하고 모집요강이나 상세 입학전형계획 발표시에 이를 발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일반전형 및 그 외 특별전형을 활성화되는 것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로 인한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의 하향평준화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바람직하다. 이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특별전형제도의 확대 여부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는 일종의 적극적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장애로 인하여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차별을 보상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차별철폐조치는 장애학생의 초중등과정에의 교육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과정에서 통합교육이 완전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도 경쟁을 통해 대학 등에 입학하기 힘든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그 전형기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전형과 그 외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길을 확실하게 명문의 입법을 통하여 터놓는 경우 장애인 특별전형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는 적다고 본다. 다만 그 취지에 맞게 중증장애인의 경우로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자격을 제한하여 일반전형 및 그 외 특별전형으로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전형 및 그 외 특별전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를 철저히 금지하고 수학편의제공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에 대한 질문금지 등 입학전형시 차별행위의 포괄적 금지

입학전형 면접시 장애에 대한 질문 및 장애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교의 수학, 생활편의 제공 내용을 정보로서 장애학생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의 특정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편의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합격이 결정된 후에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장애로 인한 입학전형시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입학전형시 금지되는 차별행위 유형을 지침으로 발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5) 배점기준의 명확화 등

장애인 입학 전형 절차가 장애인 개인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이 높이도록 배점기준, 합격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지체, 발달, 자폐, 학습장애 등의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제도를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선발기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절차적 보장

위와 같은 수학편의제공의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1) 서면에 의한 신청권과 학교의 서면화 의무 부과, 2) 서면에 의한 통지 의무화, 3) 서면통지의 내용, 방식, 4) 불복절차 규정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장애에 관한 질문 금지, 기타 차별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도 그 차별행위 또는 그 차별행위가 게재된 불합격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1차적 불복은 학교단위 장애학생교육권 보장위원회, 2차적 불복은 중앙단위의 장애학생교육권보장위원회(현행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유사한 위상)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또는 위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업에의 접근권 보장

(1) 수업관련 수학편의서비스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① 수강신청 우선권 및 수강신청정보에의 접근권, 변경권 보장, ② 특정 의무수 강수업의 일방적 면제의 금지, 수강신청변경 요구금지, 대체수단 개발의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학내 이동 및 강의실로의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①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학생용이동차량, 이동 및 활동보조원 제공, 강의실변경신청권 보장, 건물에 엘리베이터, 경사로등 편의시설 설치, 학내도로의 턱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②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학입학후 일정기간 동안 보행교육 등 오리엔테이션 실시, 이동 및 활동보조인 제공, 점자유도블록, 점자 건물표지판 등의 설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강의실 내에서의 이동 및 좌석확보가 훨씬 어 장애학생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수업내용에 대한 접근권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① 시각장애인은 경우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전자도서, 녹음도서, 점자도서 등' 해당 장애 학생이 원하는 형식의 주교재, 참고교재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저시력 장애학생은 확대본이나 확대기 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변경된 수업 또는 수업도중에 참고도서가 필요해지는 경우, 학교에 제작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재제작수당청구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자칫하다가는 학교가 시각장애인 교재제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수가 있으므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기타 유인물 등도 전자도서나 확대본 형태로 그 때 그 때 제공되어야 한다. 파워포인트 등 시각 자료는 이를 풀어 설명하는 강의기법이 필요하고, 그 외에 강의노트 필기 지원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② 청각장애인에게는 강의내용에 대한 '속기사를 통한 문자통역, 수화통역'이 가장 절실히 한다. 이에 보조적으로 수업후에 녹취해주는 서비스, 교수의 강의록, 강의노트제공, 필기지원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입모양을 읽는 구화를 구사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앞자리 좌석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 생점이 될 만한 것으로 '일정한 타수 이상의 학생대필인력의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어도 강의 내용은 전문인력에 의한 문자통역, 수화통역을 강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지원등의 문제가 걸려있으므로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전문속기사를 고용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③ 지체장애인은 필기장애가 있는 경우 필기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④ 이 외에도 다양한 장애영역이 더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지원서비스제공은 열린 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는 위의 여러 가지 장애가 중복하여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된 장애유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특별한 학습지원을 요구하는 실제적인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출석체크가 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 청각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출석체크 수단이 지원되어야 한다.

평가 또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다. 평가는 레포트 제출 통한 평가, 레포트 발표나 토론을 통한 평가, 퀴즈나 중간, 기말시험을 통한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 기본원칙으로는 장애를 고려한 합리적 과제제출기한의 설정, 수험편의의 제공의무, 평가에서의 배제 금지, 대체적 평가방식의 개발의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평가 자체를 면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에 따라 그 장애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시간 연장, 노트북 사용허용 등의 수험편의가 시각, 청각, 지체, 필기 장애 기타 장애유형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수학비용 등 수당청구제도의 도입

위에서 언급한 수업권 관련 보장 관련된 학교의 의무조치가 불이행된 경우, 또는 학교의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사비를 지출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학비용 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학교 측에서 교재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 사비를 들어 전자도서를 만들거나 녹음도서를 만드는 경우, 학교가 이동 및 활동보조인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가족이 하루 종일 달라붙어 회생하는 경우나 개인적으로 보조인을 유료로 고용해 지원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부모 등 가족이 달라붙는 형태로 가족의 노동이라는 형태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부모는 자신이 보조인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직장에 다니는 다른 소득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교의 지원체계가 짜여지기 전에 수학비용 수당청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학교가 학교의 지원체계를 제대로 짜지 않고 수당지급으로 대체하려는 행태를 보일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쟁이 필요하다.

(3) 보조적 기술장치에의 접근권 보장 문제

기술의 진보함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권의 보장수준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컴퓨터, 브레일 라이트, 점자프린터, 저시력 장애학생을 위한 확대 CCTV,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MP3 녹음재생장치, 노트북 등등 다양한 기술적 보조장치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필요하다. 미국의 IDEA에서는 ASSISTIVE TECHNOLOGY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러한 기술적 보조장치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ADA에서도 Auxiliary aids and services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를 쉽게 활용토록 도와주는 정보통신보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시켜주는 스크린 리더 등 지체·청각장애인용 7개 품목 19개 제품이다. 여기서는 장애인정보통신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보급사업 등을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나 스크린 리더, 점자단말기 등의 구입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조치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학 등에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보조적 기술장치들을 갖추어 놓도록 하고, 또한 장애학생 개인이 구입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를 안내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수학편의 제공 절차

① 입학 직후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필요한 수학편의에 대한 조사절차

① 시기는 입학직후, ② 조사방식은 개별면접조사로 하여, ③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④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 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의 제공수준에 불만족하는 경우 학교단위 장애학생교육권보장위원회, 중앙장애학생교육권보장위원회, 법원 등에 신속히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② 수강신청절차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신청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과선배 등을 장애학생교육보조원의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개별수업관련 수학편의서비스 제공신청 및 불복절차

입학 후 실제로 수강신청을 하는 개별수업에서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매학기 수강신청시에 개별 수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수학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교입학 직후 이뤄지는 포괄적인 수학편의서비스 조사와는 별도로 필요한다. 역시 절차를 공식화하고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서면화가 필요하고, 구체적 수업이 정해졌으므로 그 수업을 담당교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개별교수학습요구조사서 등의 서면화하여 작성토록 하고,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를 담당교수에게 공문형태로 보내어 주지시키고, 교수에게 구체적인 학습지원 형식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수에게 수업 이를 전까지 유인물등의 파일을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교육보조원 일을 하는 해당 봉사장학생 등에게 보내어 그 점자본이나 음성프로그램용 전자파일을 시각장애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시각장애학생 평가 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등.

④ 기타 -동의권 도입여부 및 그 범위

위의 절차에서 장애학생에게 동의권이라는 강력한 보호장치를 줄 지가 문제된다. 일단 입학직후에 이뤄지는 수학편의서비스 조사시에는 동의권이라는 장치를 부여할 필요가 크지 않을까 싶다.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가 학교단위의 장애학생교육권보장위원회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으로 사건을 가지고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절차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학교는 자신이 제공하기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은 신속하게 불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잠정적이다. 위와 같은 제도는 미국 IDEA법상 학부모의 동의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최초의 진단, 평가, 배치, IEP작성 시라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해 본 것이다.

⑤ 장애학생학습실 및 휴식공간의 마련 문제

장애학생의 경우 특히 지체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기 쉽다. 따라서 별도의 장애인휴게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은 주로 음성지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므로, 청각장애학생은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경우에 따라 소음 등으로 주변학생들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통학, 기숙사 이용, 장학금 제도 등

(1) 통학

통학보장의 범위(Door to Door원칙)을 가능하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보장하여야 한다. 스쿨버스, 셔틀버스 등의 운행시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신규차량 도입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된다. 그럴 경우 필요한 경우 콜택시 등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학 등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학수당청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콜택시 운전자에게 단순히 차량운행 외에 오르고 내릴 때 일정기간 동안 이동 및 활동보조를 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그 비용으로 위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부모가 대신 통학을 시켜주는 경우에도 부모의 노동을 인정하여 통학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학내 이동차량 또는 전동휠체어 대여, 점자블록과 터닝포인트 설치, 경우에 따라 이동보조원 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독립된 통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기숙사 제도

장애학생에 대한 최우선 배정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숙사의 자기 방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 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으로 중증지체장애인등의 활동보조인 문제가 있다.

첫째, 기숙사 동반입사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OO 대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입사하는 장애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장애인생을 장애학생의 룸메이트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해당 비장애인생의 의지 또한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해 비장애인생은 무료활동보조업무를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봉사라는 형태로 강요받게 된다. 물론 활동보조업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은 해당 비장애인생 룸메이트에게 부탁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당하게 요구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또한 그로 인한 갈등을 고스란히 개인적 차원에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원하는 경우 자리가 원하는 학생을 동반입사자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해당 장애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1인실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 또는 친척, 그 외 활동보조인 등의 동반입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허용해야 한다. OO 대학의 경우 대학원생을 위한 가족생활동을 장애학생에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기숙사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가족의 동반입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성전용기숙사에 장애인 학생의 아버지나 오빠가 입사하는 등의 예외적인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할 듯 하다. 또한 활동보조인과 같이 일정한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의 입사를 허용하는 문제도 고민이 필요할 듯 하다. 앞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활동보조인 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학생과 함께 입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숙사 상주 24시간 유료 활동보조인'을 기숙사에 배치하여야 한다. 동반 입사한 학생 또

는 가족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내용, 그리고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에는 큰 한계가 있으므로, 기숙사에 24시간 동안(필요한 경우 교대제 형태 등으로) 유료활동보조인을 상주시켜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주하는 인력이 한 사람당 장애학생 몇 명 정도를 담당해야 할지는 장애유형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을 고민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의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이미 특수교육진흥법상 학생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응용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기숙사 운영정보, 시설정보, 안전정보, 경계정보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숙사 게시판에 공고되는 내용 모두를 점자로 제공하거나 혹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에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을 택하면 될 것이고 재난경보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바로 구두로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음성방송안내의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가서 학교 내의 수화통역사를 동반하여 중요사항을 고지하거나 혹은 문서형태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경보 등 안전관리와 관계된 사항은 철저히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장애유형별로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결국 대학 등의 기숙사 운영규칙 등에 장애학생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기숙사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구체적인 개별 장애학생 정보를 사전에 확실히 제공하는 식의 행정적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장학금 제도

일단 수학 및 생활에 관련된 각종 인적, 물적 설비의 제공은 장애학생의 부담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장애학생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하고 경쟁할 수 있는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록금의 경우 만약 장애인 고등교육을 무상화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면제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무상화가 힘든 경우 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등록금 부담 등을 줄여줄 현실적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지 여부, 성적기준을 설정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5. 수업외의 학교생활 보장

구체적인 수업 외의 학교생활도 대학생활에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에 준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은 매우 방대하므로 일단 '포괄적인 학교생활 접근권' 보장 규정이 필요할 듯 하다. 그 접근권 보장내용은 학교생활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학내행사, 프로그램 등 각종 무형적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포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나열하면 입학후의 학교주최의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학생회 주최의 새터, 입학식, 졸업식 등의 행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식당, 학교매점 등의 시설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전산실, 학교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 도서관의 경우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용가능한 도서관 열람실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도서관의 도서정보 검색 및 도서대여가 자유롭게 가능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검색을 도와줄 보조원을

제공하고 학교의 장서 중 필요한 것을 점역하여 전자도서화해 줄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관련해서는 학교의 각종 시설의 게시판 등에 붙는 안내자료, 공고자료를 점자유인물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수강신청 사이트, 단대, 본부, 도서관 기타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교의 다양한 사이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장애학생 지원 행정시스템, 기구 등

(1)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단대행정, 본부행정시스템간의 관계설정

① 법적 근거 확보 및 장애영역별 전문인력확보 의무화

학교단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법률로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소규모의 대학으로 재학하는 장애학생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현재 재학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설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재학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한시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필요성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가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제공을 책임지고 기획하고 실행할 전문성이 있는 점역사가 없이는 제대로 된 전자도서 마련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속기사나 수화통역사도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필요하다. 전문속기사가 직접 일부 수업의 문자통역을 담당하는 것 외에 다른 속기사, 수화통역사를 고용, 훈련하는 경우에 그 선발,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이가 들어가야 한다. 교수나 교직원, 학생들에 대하여 해당 장애영역별 특수성을 주지시키고, 장애학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학습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교육시키는 것도 전문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각장애(점역사), 청각장애(전문속기사 및 수화통역사), 지체장애, 기타장애 등을 담당할 상근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 없는 조교 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규직원형태로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담당인력 고용시에는 장애학생당사자에 의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심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교규모에 따라 점역사, 전문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명의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고용하도록 하거나, 학교규모가 작고 장애학생이 매우 적은 경우 예외를 인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1인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고용하지 못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센터의 장 선출시 추천권 내지 동의권 부여, 인사청문회

장애학생이 센터장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거나 임명시 동의권 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동의권까지 인정될 가능성성이 적고, 추천권 정도가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임명시 장애학생의 참여하에 그 전문성, 장애인교육권 보장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는 간단한 인사청문회 형태를 도입하도록 강제하면 좋을 것이다.

② 업무영역별 창구의 일원화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위상, 권한의 명확한 규정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위상

예를 들어 군산대학교의 경우 총장직속으로 설치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행정조직상 권한있는 기관의 하부기관 내지는 독립기관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대학행정조직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한 다음에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

권한없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문제점

각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왔다. 예를 들어 훨체어장애인을 위한 1층강의실로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처 복지과, 해당 단대 행정실 등을 장애학생이 전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대학 행정 기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권한과 위상을 명확히 학칙등에 규정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권한의 명문화

학칙이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등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일정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반드시 응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듯 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업무와 대학본부, 단대행정실 등 기타 학내기관의 업무의 명확한 분장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단대에서 할지, 어떤 서비스에 신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할지 등을 미리 명확한 규정으로 구분해 장애학생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정해진 기관에 장애학생이 신청한 경우 관련되는 다른 부서에 장애학생이 다시 찾아가서 신청하거나 싸워야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절차의 공식화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하여 장애학생이 특정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이를 서면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전에 장애학생에 대하여 중요한 일정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예를 들어 최초 입학시 필요한 수학편의 내용 결정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처리기한의 명시 및 불복절차 명시가 있다. 현재 대학등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떠한 서비스를 신청할 창구는 열려 있으나, 그런 서비스를 학교가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는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학생이 필요한 조치를 신청하고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을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의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는 경우, 각 신청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7일, 14일, 학기 시작 전 30일 전 등으로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7일, 14일, 한달, 당해 학기전 30일전 등으로 기한을 정한 다음 구체적인 서비스에 따라 그 특수성을 고려해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2) 학교단위 장애학생교육권보장위원회

- 장애학생 당사자주의 -

① 장애학생 참여가 배제된 정책결정 예산낭비

학교의 행정담당자들이 장애학생의 구체적 수요, 그리고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전조사없이 예산을 집

행하다 보니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실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② 장애학생 당사자주의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학교에서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민주적 요청에서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것이다.

③ 장애학생교육권보장위원회의 신설 및 권한, 개최횟수 등의 결정

권한있는 당사자의 참석강제화

따라서 장애학생과 학교의 권한 있는 담당자(총장 또는 부총장? 개별사안에 따라 관계된 본부나 단대의 권한 있는 관계자,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도서검색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도서관장의 참여를 강제),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단체 사람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장애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기구 내지 심의기구가 필요하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단체의 추천권

구성시 절반의 인원(1/2, 구체적 비율에 대한 고민도 필요)에 대한 장애학생 당사자 내지 장애학생 단체의 추천권을 인정해야 장애인당사자주의가 관철될 수 있다. 또한 1/3이상 또는 1/2이상의 위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1/2을 1/3을 장애학생으로 하고 나머지를 추천하여 채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더더욱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권한및업무

일단 개요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학교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예산 수립시 심의권 내지 의사 결정권(이 위원회에 최종권한을 줄지는 고민요), 1. 학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관련 학칙, 규정들에 대한 심의, 수정권 부여, 1. 장애인교육법상 장애학생의 요구에 대한 학교의 거부 내지는 학교의 불이익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 1. 구체적 예산집행방식에 관한 협의권, 1. 기타 장애학생의 교육권 관련 사항

개최횟수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또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불복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그 신청 사건의 처리일수에 맞출 수 있도록 신속히 개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개 및 비공개 여부, 방청권

원칙적으로 공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심리의 경우 미국처럼 장애학생이 그 사건을 비공개로 할지, 아니면 공개해서 공공의 여론에 의한 심판의 역할도 하도록 할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속기록 등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 부과. 장애학생이나 대학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학교가 예외규정을 두어 비공개로 할 위험이 크다. 이걸 법률을 통해 최대한 막아야 한다.

③ 공식적인 신청절차 및 불복절차

- 장애학생 관련된 중요한 절차는 모두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참고하고 미국의 절차적 보장수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예산편성, 집행 등 정책결정절차에의 장애학생의 참여권 보장

- 장애학생 당사자주의 -

앞서 말한 장애학생위원회 수준이 아닌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장애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 점자프린터를 신청할 경우, 그 점자프린터 기종의 선택 및 구입처 결정 등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수, 교직원 및 봉사장학생, 속기사등 전문인력, 일반학생의 교육 및 감독절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이 정말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시기, 횟수등의 규정이 필요하고,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규정의 상세한 작성하여 교육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7. 인적지원의 활용, 교육, 감독문제

(1) 교수 및 강사

먼저 교수가 장애학생이 하고 싶어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일반적 매뉴얼을 만들어 교사 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수 및 강사에게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업 관련 하여서는 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학편의제공요청공문(letter of accommodation)을 해당 교수 등에게 미리 고지하여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다. 교수에게 장애학생교육보조원등과의 협조의무를 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외 교직원이나 일반학생의 경우에도 장애의 이해에 관한 강좌가 필요하다.

(2) 장애학생교육보조원

① 개념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적 조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활동 및 이동보조, 강의노트제공, 문자통역 내지 대필서비스 제공, 강의 녹취록 제공 서비스 제공, 전자도서 제작을 위한 타이핑 작업을 하는 사람 등을 다 가리킨다. 종래에 봉사장학생이나 근로장학생이라는 말을 썼으나, 장애학생교육보조원이 항상 학교의 학생인력을 이용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장애학생교육보조원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② 제공의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장애인교육법상 대학이 제공해야 할 조치 중에서 인력을 이용해 필요한 부분은 장애학생교육보조원의 형태로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 아래에서처럼 학교학생인력을 이용하든 외부의 유료인력을 이용하든, 전문인력을 상근직으로 고용하든, 공익요원을 이용하든 그건 학교에서 책임질 사항이다. 어느 수단을 쓰든지 간에 장애인교육법에서 정한 장애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③ 업무내용

이동 및 활동보조, 강의노트작성제공, 문자통역내지대필, 도서검색지원, 수강신청지원 등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④ 봉사장학생 제도 등을 이용한 장애학생교육보조원 모집제도

봉사장학생 제도의 장단

봉사장학생 제도란 학내의 학생인력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필요한 학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근로장학생 제도라고 하기도 한다. 많은 대학교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봉사장학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아무런 보수 없이 이뤄지는 제도는 봉사장학생 제도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런 것은 자원봉사제도라고 부르는게 타당할 것이다.

봉사장학생 제도의 장점은 인력조달의 용이함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대학교의 시스템을 잘 아는 재학생을 이용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 전문성과 책임감의 결여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위험도 크다. 특히 문자통역내지 대필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장애학생과 봉사장학생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규정

일정한 영역은 반드시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는 있는 부분으로는 첫째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나 녹음도서, 점자도서를 만드는 전문점역사의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업내용을 문자로 통역하는 대필서비스의 경우에 말을 그대로 옮겨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속기사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장애영역별로 꼭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봉사장학생제도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전문인력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생의 경우로 그 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봉사장학생 모집 등

장애학생 필요에 의하여 정원을 충분히 보장하여 장애학생의 선택권 보장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봉사장학생의 유형별 선발 및 봉사장학생의 자격, 업무 및 보수 명시 폭넓은 홍보를 통하여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도록 한다. 그리고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절차를 공식화하고, 봉사장학생 교체신청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8. 장애학생의 졸업후 진로지원, 취업지원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진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장애인 취업이 가능한 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9. 예산의 확보문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예산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을 개별학교의 예산사정에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립대학 등의 경우 장애학생의 경우 등록금 수입보다 당해 장애학생 지원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뽑는 것 또는 수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 될 우려가 큰다. 따라서 법률상 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장애인교육지원법상 장애인 고등교육 입법화의 기본 방향

1. 장애인 고등교육의 경우 별도의 절로 독립되어야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단 애초에 장애인 고등교육을 염두에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다. 현재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실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권 침해상황을 규율할 구체적인 법적 규범에 공백 상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등교육을 초중고 등에서의 장애인 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크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은 초중등 교육과는 다른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육법제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체계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교육체제도 구분되어야 한다.

2. 구체성의 강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법률이 과거 군사독재정부 시절 국회가 행정부가 입안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했던 시기에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기의 입법들은 대부분 법률에 추상적인 원칙조항만을 규정하고 대부분의 상세하고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래서 법률을 봐서는 실제 법적 보장 수준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반드시 시행령, 시행규칙을 봐야만 구체적인 보장수준의 실제적인 예측이 가능한 법률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여 헌법이 규범력을 확보하면서 과거의 이러한 지나친 포괄위임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5조도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현재 1996. 8. 29. 95헌바36, 1999. 1. 28. 97헌바90, 1999. 4. 29. 96헌바22등, 1999. 7. 22. 96헌바80등, 2000. 1. 27. 96헌바95등, 2000. 1. 27. 99헌바23, 2000. 6. 29. 98헌바92, 판례집 12-1, 2000. 7. 20. 99헌가15, 2002. 12. 18. 99헌바105등, 2002. 12. 18. 2001헌바52 등 다수)

미국의 IDEA의 방대한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의 단계에 가서 이상하게 왜곡되는 상황은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입법 시에도 최소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법체계가 영미법파는 다른 대륙법계이고 기존의 입법관행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구체성의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내용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의 개별지침, 학교의 학칙 내지 규정 등등 다양한 규범단계 중 어디에 반영할지 여부를 치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 제정과정 이외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예규나 지침, 학칙 기타 대학규정 등의 제정과정에도 정책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법률에 많이 둘수록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 쉬워지는 문제가 있고, 반면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그 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단계에서 애초 법률의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왜곡된 가능성이 크다. 양자 사이에서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우선순위 결정 필요성

실제 입법에서 위의 내용을 한번에 다 실현시키는 입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는 우선순위를 골라내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부분을 골라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고등교육 부분이 전체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얼마나 반영되고, 또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반영될지는 당해 장애인 대학생들의 참여의 강도와 절박한 필요의 정도가 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4. 대강의 체계 초안

일단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큰 틀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

제3장 초중등교육

제4장 고등교육

제5장 평생교육

제6장 보착 및 벌칙

부칙

그 중 고등교육부분 기본체계를 매우 거칠게 잡아보았다. 다만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생각에 기초한 매우 거친 초안 형태로 앞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다른 영역인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과 공통으로 겹치는 사항(예를 들어 절차부분, 교육보조원 부분 등)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총칙부분에서 규정하고 장애인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다.

<p>제1절 통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1. 정의 1. 차별금지 <p>제2절 입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전형 종류 1. 수험편의제공의무 <p>제3절 학업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강신청등 1. 수학편의등 1. 이동지원 1. 강의실 접근 1. 강의내용 접근 -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록매체 -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수화통역등 - 기타조치 1. 평가 	<p>제4절 학교생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학편의등 1. 생활시설등 1. 취업, 진학 등 진로지원 <p>제5절 장애학생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직원 및 학생 1. 장애학생교육보조원 및 봉사장학생 이용범위 1. 장애학생지원센터 1. 장애학생지원수당 1. 장애학생교육권보장위원회 1. 지원절차 및 불복절차 <p>제6절 보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지침 및 학칙등 1. 편의시설 및 기술적 보조장치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	---

지정토론 - 1

(고등교육 분야)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토론자료”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육연구사)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토론 자료 -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I. 들어가는 말

대학 등에서의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와 입법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자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인 고등교육 현실을 당사자들과의 밀착된 접촉을 통해 매우 심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대책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발표자는 먼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실태를 (1) 입학과 (2) 수업의 접근권, (3) 통학/기숙사/장학금 또는 수당제도, (4) 학교생활시설, (5) 진로 지원 실태, (6) 지원을 위한 절차와 기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어서,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규범에 대한 실태로 (1) 특수교육진흥법의 고등교육 적용 여부에 대한 통합교육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임산부등의편의증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대학 내 편의시설 마련과 이동 및 접근 등에 관한 보장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끝으로 발표자는 이러한 고등교육 실태와 법적 보장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덟 가지 정책 구상을 제안하고 장애인 고등교육 입법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자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에 대해 발표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부분 동의하며, 여덟 가지 정책구상과 입법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한다.

다만, 발표자의 발표 내용 중 (1) 특별전형 실태와 (2) 학습지원, (3) 진로 및 취업 지원, (4) 발달장애인 등의 고등교육, (5)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발표자의 주장을 좀더 보완하고, 토론자의 주장도 더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주무부서와 몇 가지 추진 정책들도 제시할 것이다.

II. 토론 사항

1.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 확대 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웹 사이트 자료를 정리한 결과, 2005학년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모집 정원은 4년제 대학에서만 약 1,25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http://univ.kcue.or.kr/>) 그

러나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전문대학을 포함해 연평균 443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모집 정원의 1/3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학업에 뜻은 있으나 대학의 교육환경이 미비하여 포기하는 장애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대학에 들어올 만한 장애학생이 모집정원을 훨씬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계나 현 장애인 교육 현장의 상황을 볼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장애학생들도 대부분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공부할 정도의 학생들은 앞으로도 그다지 늘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학년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결과를 분석해 보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 2004학년도 장애학생 대학 진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역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졸업생 수	시각장애	170	13	6	189
	청각장애	152	13	50	215
	지체장애	237	32	117	386
	정신지체	1,300	511	151	1,962
	정서장애	109	20	27	156
	학습장애		44	28	72
	계	1,968	633	379	2,980
2004학년도 진학생 수	140	31	88	259	
2004년도 대학 진학율	7.1	4.9	23.2	11.7	

* 자료의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실태조사서.

<표1>에 의하면, 2004학년도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424명의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259명으로 나타나 전체 입학생의 61%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9%에 해당하는 165명의 학생들은 2004년 이전의 졸업생들이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장애학생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추정된다.

국가의 통합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앞으로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생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현재도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의 학생수를 비교하면, 각각 639명, 816명, 942명임) 수년 내에 현재의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수인 1,680명 수준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일반학급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아직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장애인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전망 폭은 그다지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상당기간 유지한다고 볼 때, 통합교육의 활성화란 곧, 특수학교 학생들의 중증·중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특수학교의 대학진학률을 현재 수준에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보다 떨어지게 할 것이며,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수가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수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반학급에 방치되어 있는 특수학급 교육 대상 학생들을 우선 흡수하는 것이므로 실제 졸업생 수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 <표2>를 참고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2> 학교(급)별 학년 평균 장애학생 분포 현황

(2004년 현재)

장애학생소속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3,359	1,679	799
일반학급	188	147	495

* 자료의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실태조사서.

그러므로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를 늘려가며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현재로선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의 명확한 구분

2004학년도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424명의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는 259명으로 나타나 전체 입학생의 61%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9%에 해당하는 165명의 학생들은 2004년 이전의 졸업생들이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장애학생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165명의 학생들 가운데는 몇몇 이전 졸업생들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이 일반전형을 통해서도 입학이 가능한 학생들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나타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 외) 기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표3> 참조).

<표3>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외) 기준의 예

모집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반영비율 (%)
정시 (나)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졸업 예정자 포함)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포함). 단, 본 대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 신중히 지원하기 바람. 	언어/수리/외국어(영어)영역 중 1개영역 6 등급이내	학생부20% + 수능 80%

* 자료의 출처 : 본 자료는 특정대학의 웹 사이트를 참조한 것으로 출처는 밝히지 않음

<표3>의 내용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취하고 있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방식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이다. 대학에서 공부할 장애인을 정원 외로 특별전형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 장애인은 특수교육진흥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혹은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특수교육진흥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임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공인된 증명이 어렵고, 대학 스스로 소수의 장애인 선발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1998년 이후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을 따로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정원 외 입학 대상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로 진단된 장애인으로 한정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서 정한 장애인 가운데는 굳이 교육상의 특별한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그 선발 기준을 제고하여 단지 등록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전형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특별전형의 이점인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보다 상위대학에 진학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할 것이다.

3.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1) 발달장애의 개념과 고등교육 요구 현황

"발달장애"란 미국 공법 95-682인 발달장애 권리장전법(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Bill of Rights Act, 1978)에 제시된 발달장애의 정의로서, 발달장애는 22세 이전에 시작하여 주요 생활활동의 3가지 혹은 그 이상 영역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성을 초래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손상으로 무기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중도장애로 볼 수 있다.(박승희 역, 1994; 박승희, 신현기 역, 2003). 이 발달장애를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되는 분류로 이해한다면, 정신지체, 복합장애, 농-맹, 혹은 자폐를 포함한다(McDonnell, Wilcox, & Hardman, 1991). |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을 모두 합쳐 3,005명이며, 이 가운데 정신지체,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소위 대학수학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학습능력을 지닌 학생들은 총 2,19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206명은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현행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으로 일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대학의 경우 특수학급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시각장애학생과 청각장애학생, 지체부자유학생 총수가 815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특별전형 등으로 대학에 갈 수 있

는 학생은 약 35~40%로 추정되고 있어(이 추정치는 과학적인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닌, 특수학교 입시반 담임교사들의 경험적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는 없음) 크게 잡더라도 326명에 지나지 않아 2004년도 특별전형 입학자 424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나머지 입학자의 대부분이 이들 가운데서 선발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90여 명의 장애학생들은 단순히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학생이 아닌 소위 중복장애를 지닌 발달장애로 불리는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입시제도상 발달장애학생들이 비록 소수(4.5%)이긴 하지만 엄연히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 대두

송병국(2005)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기본권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 내지 학습권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 측면, 그리고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적극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Homo Studens)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학습권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학습을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교육이나 학습의 중요성은 유용성의 관점에서만 강조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런 입장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존재로 존엄성을 인정받아 그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할 능력을 키워주는 생산적 복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기존의 소극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자활능력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이 생산적 복지 관점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분야가 먼저 철저하게 탐색되어 요구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이 무엇인지 분석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자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구안되어야 한다. 특히, 학령기에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경우는 기초학력 결손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을 포함한 직업능력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송병국, 2005).

끝으로, 지식기반사회가 초래하는 어두운 면으로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갈수록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침해화된다. 그러므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도록 돋는 이른바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5.4%로 미국의 42%, 영국의 45%, 캐나다 37%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소외계층의 참여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박승희(2004)는 통합 환경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확대에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회 확대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와 같이 대학 수업이 가능한 소수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도 중요하게 포함되지만, 발달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성인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제까지 특수학교 고등부나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성인기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장애인관련 복지관이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 과정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한정된 경향을 보여 왔고, 나아가 그러한 직업훈련 과정은 대부분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분리 프로그램으로서 비장애인과 통합된 환경에서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것은 거의 드문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박승희(2004)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강조한다. 즉, 이제는 중등교육 이후의 다양한 고등교육 기회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각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격성에서 개인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를 하며, 동시에 프로그램 고안 및 실행에서 통합(inclusion)을 강조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대학에는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환경적으로 성인기 초기에 있는 비 장애 대학생들과 교직원 및 그 외에도 다양한 구성원과 많은 이동 인구가 있어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통합 프로그램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3)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형태

지난 2000년 10월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개교를 앞두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신지체부모회와의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후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발달장애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요강을 내거나 선발하는 대학은 없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몇몇 대학들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성인기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 가르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은 'Higher Education'으로서보다는 'Postsecondary Education', 즉 '중등 이후의 교육'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발달장애인을 공식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고등교육기관이 없고,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주로 특수학교에 있는 전공과에 입학하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199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전공과는 전국적으로 28개 특수학교에 총 68개 학급이 있으며, 이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중등교육 이후 발달장애인은 702명으로 밝혀지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장애인복지관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직업재활시설로서 전국적으로 241개(2005. 1. 현재, <http://www.hinet.or.kr>)가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현황까지는 알기 어렵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곳도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지난 2001년 2학기부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학기 단위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세 시간